

발간등록번호
11-1250000-000087-01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안 내 문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한 후 남북한 법·제도 체제 차이로 인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 (채무, 브로커 문제, 결혼, 가족입국 문제, 부당해고, 사기, 폭행 등)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법치주의 이해 및 법률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0.7.21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업무협약 체결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궁금해 하는 법률상담 사례들을 전국의 하나센터 및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등을 통해 수집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통일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사례집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 및 담당자 여러분들의 업무에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 동 사례집의 답변내용은 법률상담과 관련한 보조수단으로서의 참고 사례이며, 향후 법적분쟁 관련 법률사례 등 세부적인 상담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02-3476-4003)으로부터 정확한 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ontents

I 민사

- 1. 채무 3
- 2. 브로커 8
- 3. 계약 15
- 4. 임금체불 18
- 5. 사기 22
- 6. 기타 26

II 가사

- 1. 이혼 41
- 2. 호적문제 51
- 3. 위장결혼 59
- 4. 결혼 62
- 5. 개명 64

III 형사

- 1. 폭행 69
- 2. 교통사고 75
- 3. 기타 81

Contents

IV

행정 및 정착지원

- 1. 주민등록 89
- 2. 정착지원 91
- 3. 각종급여 94
- 4. 기타 98

V

부록

-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7
-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151



I

원자

1. 채무
2. 브로커
3. 계약
4. 임금체불
5. 사기
6. 기타

1. 채무

질문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먼저, 그 친구와의 친밀도도 중요하지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변제자력을 확인해야 하는데, 변제자력이 없다면 일단 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만약 빌려주기로 한 경우 친구로부터 원금과 이자, 변제기, 담보방법 등을 직접 기재한 차용증서를 받아두어야 향후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까지 받아둔다면 향후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보다 용이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질문

돈을 빌려준 경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빌린 돈은 변제기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선 차용증 등에서 상호 약정한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일 당일까지 변제해야 하고, 만약 변제기의 정함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특정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촉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정한 특정일이 변제기가 됩니다.
 - 한편, 채권은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소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 각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됩니다.

민사

질문

하나원 선배가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평소 친분을 생각하여 빌려주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예방책은 무엇인가요?

- 먼저,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선배의 재산을 확인하여 그 재산에 가압류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선배의 재산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차용증이 없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차용증 작성을 유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정착금과 일해서 번 돈 800만원을 동네에서 옷가게를 하는 남한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채무자는 이미 동네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였고 장사도 잘 되지 않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채무자는 고령이어서 법적으로 사기죄 고발조치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절차가 가장 합리적인가요?

- 돈을 빌려줄 때는 변제자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과 자필 차용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신속히 남아있는 재산에 가압류라도 하여 책임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타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미리 받아둔다면 채권 회수가 보다 용이하게 됩니다.

- 한편, 아무리 고령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아무런 재산확보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도 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달리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

교제하던 남성에게 차량 구입대금으로 1,1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그 남성이 기혼자임이 밝혀졌고, 그 남성은 이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본인이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혐의 결정, 제정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전반적인 법적 쟁점 및 향후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 이미 형사적으로 사기소고가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래 돈을 준 취지대로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북한에 남아있는 자녀의 탈북비용으로 브로커에게 1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브로커는 가짜 딸을 전화로 연계시켜주는 등 진행상황을 거짓으로 얘기하고 결국 1천만원의 비용도 환불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법적인 소송절차를 밟아 승소하여 브로커가 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브로커는 임대아파트 보증금도 가압류 되어있지만 비용이 반환되지 않아 본인은 생활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 먼저,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이미 가압류되어 있는 보증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하여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적습니다.
- 한편, 형사적으로 딸의 탈북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으나 가짜 딸을 연계하는 등 진행사항이 거짓이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형사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채무의 소멸시효

11년 전 갑이라는 친구에게 5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 대신 그 해 10월까지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받아두었음. 그런데 그 친구는 3년이 지난 후에야 300만원을 갚았고 현재까지 나머지 200만원은 갚고 있지 않은 상태임. 받지 못한 나머지 200만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서 잠을 잔다면 법은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그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 시효가 더 짧아서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사안의 경우 어음금의 경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음금 시효 소멸되어 어음금 청구를 할 수는 없음. 그러나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1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친구가 일부 돈을 갚은 때로부터는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여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약속 어음을 대여금 청구의 증거로 첨부하여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브로커

질문

2년간 근무하던 회사 사장에게 700만원 대여해주고 담보로 담보증서를 받았는데 담보증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 사례에서 담보증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나,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작성해 준 것이라면 문서의 제목을 불문하고 그것은 차용증서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 여하튼 담보증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였고 그 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상담자는 이 사례에서 담보증서의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탈북브로커를 만나 성사비로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어 기일까지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브로커가 욕을 하고 협박하며 집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훈련도 미루고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과도하게 욕을 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커가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협박을 계속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중단시켜야 합니다.
 - 브로커 비용은 당초 약정한 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워 이를 약속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 브로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기를 늦추는 약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다만, 약정한 브로커 비용이 과도한 금액이라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탈북자의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 감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후 국내에 들어와서 브로커와 상의하여 100만원을 깎아 2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즉시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회수, 파기 하지 못하다보니 브로커가 다시 1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 합니다.

- 당초 약정된 브로커 비용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합의하고 200만원을 변제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증인들과 모두 한자리에 모여 1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거나 원래의 계약서를 반환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그 외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판결로 확인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질문

브로커비용을 지불해야하는데 돈을 다른 곳에 지출하여 기한 내에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브로커가 기한을 늦추는 대신 비용을 100만원 더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사문제는 주로 사인간의 문제이므로 여기에는 계약자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브로커 비용을 갚을 것인지 변제기를 연장하는 대신 금액을 올려 줄 것인지는 결국 본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 다만, 추후라도 본인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인지, 100만원을 더 주기로 한다면 실제로 100만원을 약속한 날까지 더 줄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만원만 증액된 상태에서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

탈북여성 A는 조선족남편 B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본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브로커 C가 자신에게 7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B를 한국으로 데려오겠다고 하였습니다. 필요서류를 C에게 제출했으나 C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A는 법무사에게 상담 후 합법적인 초청과 같은 방법으로 B를 입국시키기로 하고 브로커 C에게 제출한 서류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C는 돌려받고 싶으면 돈을 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 사례는 A가 C에게 관련서류만 제출하였지 아직 비용 70만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서반환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C에게 제출한 서류가 재발급이 가능한 것이라면 문서반환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그러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라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서류 일체를 반환하라는 의사를 전달한 후,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고소하여 반환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브로커 비용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으며 남들에 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브로커 비용을 갚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브로커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브로커가 면제해주지 않는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먼저 상호 합의에 의해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그러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탈북자의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 감액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

입국당시 브로커비용 800만원 갚을 것을 각서를 쓰고 입국하였습니다. 입국하고 보니 브로커비용이 너무 많아 30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하였으나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연락 두절 상태로 지내다 최근 연락처를 알아내서 8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브로커는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지불 이행하라는 통보가 왔는데 대처 방안이 있나요?

- 먼저, 고소사건의 경우 경찰의 소환에 응하여 돈을 지금까지 갚지 못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다면 범죄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우선 이의신청을 한 후 재판절차에서 브로커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이는 탈북자의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한다면 감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브로커를 통해 입국 성사시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내 입국 하였으나 마음이 변하여 브로커 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다 브로커에게 납치, 감금되어 차용증서를 쓰라는 협박을 받고 차용증을 강제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브로커가 그것을 근거로 돈을 요구하고 법원에 차용금 변제소송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 성사시 브로커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약정한 결과가 나왔다면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면 진행 중인 소송절차에서 탈북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하여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음이 변한 것만으로는 거절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한편, 브로커 비용을 지급받기 위하여 납치, 감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형사고소하여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이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될 것이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일정 금액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중국에서 한국입국비용을 400만원 주기로 하고 계약서를 받아갔습니다. 소개비로 50만원을 선지급 하고, 하나원 수수료 후 25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협박을 통해 계약서를 받아갔습니다. 보통 브로커 비용이 3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해 나머지 금액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폭설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 브로커 비용 관련 소송을 걸어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 브로커 비용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고, 브로커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브로커가 면제해주지 않는 이상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그 금액이 과도한 경우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는 무효라는 민법 104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절차에서 탈북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행위임을 주장, 입증한다면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채업자의 고이자

몇 년 전 너무 돈이 급한 나머지 사채업자로부터 돈 천만원을 빌리고 금방 갚을 생각으로 5부 이자를 달라는 사채업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했음. 중간 중간에 갚은 돈이 있는데 사채업자는 그 돈이 모두 이자로 총당되었다면서 현재는 이자를 포함해서 약 5천만원을 달라고 함. 무슨 방법이 없을까?

서민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제액이나 이자에 대한 정확한 약정 없이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이 작성 되면 민사소송에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부득이 사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제액과 이자에 대한 분명한 약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서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최고 이자율은 연40%이지만, 시행령에서 연30%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최고이자율은 연30%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의 최고 이자율 연30%를 넘은 부분은 무효이며, 돈을 빌린 사람이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는 우선 원금에서 제하고, 원금을 제하고도 남은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질문

취업 계약 시 구두로 기숙사 제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취업활동 첫째 날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업무의 과중이 높아 퇴직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첫째 날 임금은 지불해주고 기숙사로 제공되었던 고시원에 대한 한 달 치 월세를 본인에게 지불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고시원이 기숙사로 알고 1일 정도 거주했고, 입체는 차후에 1인이 더 들어와 함께 기숙사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시원은 회사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고, 본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비용에 대한 지불 책임을 져야 할까요?

- 고용계약을 구두로 했지만 그 내용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기숙사를 제공하고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사안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사료되는바, 통고한 날로부터 1월간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의뢰인에게 있습니다. 의뢰인이 하루 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치 임금과 기숙사 하루 사용 비용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되나, 회사가 주장하는 고시원 한 달 치 임대비용은 회사의 특별손해로 의뢰인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의뢰인의 배상 의무가 있으며, 배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액도 2인 1실 사용예정이므로 반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민사

질문

구두계약의 효력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 계약은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게 되므로 당사자에게 유리한 계약내용을 주장하려면 그 계약내용이 구두 합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식당을 인수 받으면서 계약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이 부족하여 계약금 반환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 계약서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식당을 인수하는 경우 통상 인수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하고 계약금(통상 인수대금의 10%)은 해약금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바, 양도인이 해약 시 계약금의 2배를 인수인이 해약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는데, 잔금 부족은 인수인의 책임이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으며 중도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 계약금이 500만원이라면 계약금을 지급하여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을 다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여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기 지급한 400만원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범위를 계약금 상당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철회

인터넷으로 물건 확인하고 가장 싼 값에 비교하고, 전화 한통하면 구매 가능한 시대에 쓴말은 속 빼고 단말만 늘어놓는 방문 판매업자의 얘기에 순간적으로 넘어가 30만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하자가 너무 많은데 계약 철회는 가능한지?

방문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이나 계약서를 주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는 특별한 계약 파기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물건을 구매할 의사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철회를 할 수가 있음.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물건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안전함. 즉 계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서면을 14일 이내에 발송하면 그 서면이 14일 이후에 판매자에게 도착하더라도 청약 철회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4. 임금체불

질문

향후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월급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처리기한(25일)내에 사업주에게 청산토록해야 합니다. 청산기한 내 청산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형이 부과됩니다. (주로 벌금형). 근로자는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데 대하여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고용주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인 가압류(비용은 노동부에서 지원) 등 절차를 취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무자력이면 사실상 임금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질문

거주지가 배정되기 전까지 1달 1주일정도 열심히 일하였는데 1주일 일한 금액만 받고 1달 일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질문

임금 체불된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진정해서 대표자가 구약식처분 받은 상태입니다.

-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질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급여를 2개월째 못 받고 있습니다. 조치 방법이 있나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질문

입사 후 7개월간 근무하다가 학원수강을 이유로 퇴사 후 재입사하여 1년 3개월을 근무하다가 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 퇴직금을 지불하겠다고 사업주가 말을 바꾸었는데 대처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주가 노동부에 신고한 고용보험 등록상 상시근로자수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으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여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 수령여부를 판단받으면 됩니다.

질문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85만원입니다. 사업주는 나라에서 70만원을 보조 받고 있다. 각종 수당을 넣어 보조 받고 있지만 실제 임금을 지불할 때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은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고용지원금은 피고용 북한이탈주민 1인 기준으로 임금의 1/2까지 지급되며(한도액 1~12개월 50만원, 13~24개월 70만원), 지급기간은 24개월입니다.(단, 한직장 장기근무의 경우 36개월까지 1년 연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상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과 가족수당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지급시마다 적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얼마 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음. 이유는 파업에 참가해 회사의 기물을 부수고 동료들이 출근하지 못하도록 저지했다는 것임. 하지만 저는 파업에 참여한 적도 없고 회사의 기물을 부순 것도 없음. 이 억울한 사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인지가 문제되는데 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한 적이 없고 동료 직원의 출근을 방해한 적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노동 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또한 사용자에게 의한 일방적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당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어찌될 것인가. 현행법은 부당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 기간 중 회사에서 일을 못했더라도 계속 일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사기

질문

전화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가능한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전화사기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보상을 받을 수는 없으며, 사기죄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를 해도 범인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사이버경찰청 등에 신고(국번없이 1336)하는 것이 추가 범죄를 막는 길이 됩니다.

질문

같은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중간브로커 역할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서 써버렸습니다. 또한 동네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여러차례 돈을 빌려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집을 가출한 상태이고, 피해자들이 본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사기에 가담하여 중간브로커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경우 긴급체포가 아니라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므로 체포에 응하되,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 안되면 48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합니다.

질문

여자가 치매가 있는 본인의 아버지에게 병원에 입원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1,600만원을 편취해서 달아났습니다. 대처 방법이 무엇인가요?

- 편취한 여자를 사기죄로 경찰서등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한편, 형사소송절차중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소송을 통하여 편취당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질문

사촌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동생과 함께 지내왔고 동생의 자금을 관리했다고 주장하던 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 사람의 행방과 동생의 유품을 찾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사촌동생이 사망했는지 여부는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거나 동생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에 사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되, 동생의 유품은 같이 지낸 사람을 찾아야 찾을 수 있지 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건강식품을 850만원어치 구매 하면서 낫지 않으면 100% 환불하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섭취되어온 식품으로 식약청의 과학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전자라면, 식약청으로부터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마크를 부착해 판매되는 것이 후자입니다. 사안의 경우 후자로 판단되는바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낫지 않은 사정을 밝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광고주들 경우 어떤 이유를 대든지 환불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각서에 따라 민사상의 청구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위과장광고로 고소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낫지 않으면'이란 말로 보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라면 약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광고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염려가 크고 허위 과대광고 소지가 높아 주의하여야 합니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면 청약철회하고 반품할 수 있습니다.

고 소

오늘은 그냥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나 사장실에 불려간 나두통씨. 어떤 일로 미운털이 박힌 건지 사장의 폭언은 1년째 계속 되고 며칠 후 정신과에 찾아가 직장에서 겪은 스트레스를 얘기하다 고소를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찾았겠다 싶어 결국 보기 싫은 사장도 혼내줄 겸 정신과 치료를 빌미로 고소를 하기로 맘먹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고소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임. 따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사 범죄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무고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 여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6. 기타

질문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미성년자인 딸이 보증을 섰습니다. 이 경우 딸이 책임을 져야 할까요?

- 미성년자는 친권자인 부모나, 부모가 없는 경우 법에 정해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빚에 관한 보증을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그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증을 선 경우 그 사실을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 보증을 선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보증행위를 취소한다는 뜻을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라고 합니다)에게 통지해서 미성년자가 보증책임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자인 것처럼 속였거나,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가 보증을 선 것을 인정한 후에는 다시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질문

타인이 핸드폰 개통 시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핸드폰 요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허락한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본인은 핸드폰 요금을 물어줄 책임이 있으며, 다만 그 물어준 핸드폰 요금을 본인의 이름을 빌어 실제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물어주고 다시 청구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구상권행사라고 합니다.

질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중 친구가 본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위반으로 인해 임대주택을 반납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집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집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비록 이름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집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누군가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일, 중국에서 살았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험담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내 명예가 침해당하는 내용을 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이 공연하게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내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절차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문의하시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

질문

어려운 살림살이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으로 연락하시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상담으로 그치지 않고 소송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도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질문

생계비를 40만원 받고 있는 탈북여성 A는 먼저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매달 15만원씩 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가입하였으나 자신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보험해지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 한 번 보험계약을 맺고 나면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생겼더라도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마음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보험계약의 경우 표준약관상 변심철회라고 해서 보험계약자가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통신수단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보험회사에 보험청약철회통지를 하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받아야 하는데 약관을 주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또 보험의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거나 실제 보험의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을 맺도록 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질문 내용만으로는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잇몸 통증으로 치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염증 치료가 잘 되지 않아 목 주위까지 전이되어 수술까지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런 문제는 매우 전문적이고 까다로운 문제에 해당하고, 치과의사의 잘못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 우선 염증이 목 주위까지 퍼진 것이 치과의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으로 일어난 일인지 여부를 제대로 가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료받은 치과에서 자신의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해서 진료기록 복사본을 받아낸 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만일 치과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내과의원에서 4년간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초진 당시 갑상선에 혹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수술할 크기가 아니라며 약만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올 초 대학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어 긴급수술로 갑상선을 절제 하였습니다. 종양을 발견하고도 치료를 방치한 내과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 사고처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병원의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해 줄 의무만 지는 것이지 반드시 병을 낫게 해 주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었다거나 다른 병이 생겼다고 해서 언제나 의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질문 내용에서 치료하던 의사가 종양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리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갑상선 치료 과정에서 갑상선에 암이 새로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의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우선 해야 할 일은 치료받은 내과에서 자신의 진료기록 일체를 복사해 달라고 요구해서 진료기록 복사본을 받아낸 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만일 의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그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결혼을 하려고 하는 남자가 돈이 필요하다며 은행에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면서 살림을 합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데 남자의 말에 따라야 할까요?

- 남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더라도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별산제라고 해서 별도의 약속이 없는 한 남편의 돈 문제는 남편이, 아내의 돈 문제는 아내가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 물론 부부니까 좋은 뜻으로 상대방의 빚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에게 이용만 당하고 빚만 떠안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비록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보증을 서 주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임차권 약정 당시 법률상 배우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혼하였는데 남편의 임차권 명의를 양수할 수 있을까요?

- 북한이탈주민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명의변경 등에 제약이 뒤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권 명의를 넘겨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법원에서 명의를 넘겨주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명의변경도 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만일 남편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그 자격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그 임차권 명의를 양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임대차의 경우라면 임차인인 남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하면 이혼한 부인도 임차권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그 양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받은 임차권이 유지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민사

질문

산책 중 인근 주민의 개에 물려 형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배상을 하는데 소극적인데 치료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있을까요?

-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은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1) 이미 지출한 치료비, 2)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 앞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향후치료비라고 합니다), 3) 혹시 치료기간 중 입원 등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만큼의 손해 4) 개에게 물려 상처를 입게 됨으로써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입니다.
-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이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개에게 물려 후유증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년, 개에게 물려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차량 도난 후 1년 뒤 경찰서에서 발견 통지, 현재 점유자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대립되는 상태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될까요?

- 이 경우는 점유자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어떻게 대립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답변하기가 애매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를 변경되어야 하므로 도난 후 1년 동안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명의를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점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

자녀가 시내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시내버스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적절한 답변이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6하원칙에 따라 질문내용을 잘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어떤 경우이든 내가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즉시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질문

근저당권자의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 가능한가요?

- 2순위 근저당권자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경매목적물의 가치가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법원에서 경매개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 경매개시 단계까지는 2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으로 평가되어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경매가 진행되면서 유찰이 거듭됨에 따라 최저경매가격이 점차 낮아지게 되어 2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선순위의 채권자들의 채권을 회수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경매가 취소되게 됩니다.

질문

손해배상 청구를 사건 발생지가 아닌 현 거주지에서 할 수 있을까요?

- 통상의 손해배상청구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사람인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인 원고의 현 거주지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회사에서 본인이 하는 일이 아닌 분야를 사장이 지시하여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1개월 후 강제 퇴사된 것을 2개월 정도 지나서 알게 되었으며 현재 강제퇴사 된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강제퇴사 당한 후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여 업주를 고발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질문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본인의 분야인데 어떤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떤 경위로 산업재해를 입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상담과정에서 이러한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위에 따라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본인에게 과실이 매우 커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가 아니어서 해고가 부당한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 해고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질문

삼촌의 현금을 1년간 선량하게 관리해주면서 탈락된 기초생활수급, 의료보험 등 사례비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돈으로 돌려주어야 하나요?

○ 질의의 요약과 질의 내용이 잘못 관련지어져 있습니다.

- 질의 내용은 결국 삼촌의 현금을 자신명으로 보유하게 됨으로써 외형상 일정한 규모의 자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어 그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료가 삼촌의 현금자산만큼 더 많이 부과되므로(아마도 지역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됨), 그에 대한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 결국 질의 요약에 표시된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는 것이고, 다만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의 예금을 관리함으로써 금융실명제에 위반한 것이 문제될 뿐입니다. 만일 사안이 이와 다른 것이라면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이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금융실명제 위반 문제만 남는 것으로 정리할 경우, 그 대가로 받은 500만원 중 일부를 반환해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질문

월급을 받으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은 사실이 발각돼 반환요구를 받았 습니다. '사장과 공모한 일인데 이제는 모른 척 하여 고발하려고 하는 데 방법이 있나요?

- 사장과 공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다면 사장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을 받은 본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은 이익보다 수급자 본인이 받은 이익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보다는 수급자 본인에 대한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 이런 사정을 무릅쓰고 사장을 고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고발절차 없이 본인에 대한 부정수급 조사과정에서 사장과 공모한 사실을 진술하여도 충분하며, 자신을 조사하는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무리한 노동으로 팔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치료비를 산재처리해서 기업체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판명된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산재처리는 해당 기업체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체가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므로 만일 본인이 근무하던 기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체라 하더라도 법률상 산재보험의무 가입대상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체만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산재보험에 의해 손해의 전부가 보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은행에서 대출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아 사업이 부도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신용불량회복 방법은 무엇인가요?

- 신용불량을 해소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신용불량자에게 전혀 소득이 없거나 부정기적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파산(및 면책),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거나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파산(및 면책)이나 개인회생절차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번호 사단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액심판제도

Q 특별한 이유 없이 몇 달째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나 친구로부터 소액의 사기를 당했을 때처럼 일천만원 이하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A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일반 보통의 민사 사건에 비하여 매우 간략한 절차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단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이를 피고에게 발송하여 이행 권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2주 동안 피고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 대리의 경우에도 변호사 대리가 원칙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도 이례 변론에서 바로 결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의 소송보다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소송이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통 재판과 달라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처 남편 부모나 자식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III

개사

1. 이혼
2. 호적문제
3. 위장결혼
4. 결혼
5. 개명

1. 이혼

질문

탈북이전 북한에 남편을 두고 혼자 탈북한 뒤 남한에서 새로 남자를 만나 동거중입니다. 현재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북한에 있는 남편이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현재 동거중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북한에 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요?

- 국내법은 2중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재 동거중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재북배우자와의 이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상대방 배우자가 남한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컨대, “재북 배우자의 보호 결정 여부 확인서”등)를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재판은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진행되며,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위 공시송달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참조)

질문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하기 이전 중국에서 중국남자(조선족 또는 한족)를 만나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국내에 입국하여 아이를 데려오기위해 중국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남편이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고 본인도 중국 남편과 같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이때 중국 남자와 이혼할 수 있을까요?

- 국내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한 북한이탈주민은 별도의 특례 절차 없이 일반국민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국제결혼은 물론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거주자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남편과의 협의에 의해서도 이혼할 수 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청구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거나 방치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님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 사례의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열거된 재판상 이혼원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거나 방치한 경우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의 한족남편과 국제결혼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의 연락처와 행방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혼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 ㉠ 중국 남편을 상대로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이후 공시송달 절차에 의해 재판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 *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의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질문

중국남편(조선족 또는 한족)을 초청형식으로 데려와 살고 있으나 중국 남편은 남한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사사건건 시비와 상습적 폭행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므로 중국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이 가능하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사실과 도박사실들을 이유로 국내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이혼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유책배우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사유(폭행·협박 등)와 이혼 등으로 입게 된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위자료 액수는 어떤 원칙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지고 판사는 당해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를 결정합니다.

가사

질문

조선족 남편과 국제결혼 절차를 마친 후 남편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 본인의 마음이 변하여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혼할 수 있나요?

- 우선적으로 조선족 남편과 협의이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남편과 이혼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을 상대로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으나,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소할 수 없습니다.

질문

중국 조선족 남편을 초청하여 국내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가정폭력이 심합니다. 최근 폭행을 당해 한 쪽 눈이 실명되었고, 남편의 비자는 만기가 지났는데 본인의 동의 없이 돈을 주고 연장을 했습니다. 경찰을 불러도 해결되지 않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부 쌍방간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 사실 등을 이유로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남편의 폭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배우자가 북한이탈주민이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참조).

질문

국제결혼으로 한쪽남편을 초청하여 살았는데 한쪽남편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고를 많이 쳐서 뒷수습을 하느라 매우 힘들게 살았는데 최근에 집에 나가 현재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남편의 거소지(외국인의 거소등록지) 등 국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 외국인의 거소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이혼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소송이 진행됩니다.
- 남편이 가출하여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그 사유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청구가 인정됩니다.

질문

남한에서 결혼한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일하여 모은 돈을 남편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해왔는데 그 돈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이혼을 하여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이혼당시 존재하는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를 위해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공동의 노력 또는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의 실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가사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쌍방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쌍방합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 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고,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질문

한국인 남자와 동거하면서 결혼까지 약속하였으나, 동거하면서 불만과 불신이 쌓여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동거하면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다른 생활물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처럼 동거생활 중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증식한 전체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질문

남편과 결혼하여 자녀 1명을 낳았습니다. 남편과 이혼할 때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민법 제837조)
- 판례 또는 재판실무상 양육자 지정기준을 살펴보면, ① 자녀의 현재상태를 존중하고 현실적으로 자녀를 보호, 교양하는 부모를 우선시킵니다. ② 젖 먹이 아이의 경우는 모를 우선시킨다. ③ 자녀가 철이 들어 있으면(가사소송규칙상에는 15세 이상) 자녀의 의향을 존중하여 줍니다. ④ 자녀의 정신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물질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보다 우선시킵니다. 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부모의 성격, 부모의 보호, 교양능력, 자녀를 둘 경우 인적, 물적 환경 및 생활상황, 부모의 양육실적 등 자녀의 보호, 교양관련 제반 요인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⑥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질문

자녀의 양육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 부모에게 청구하는데, 상대방 부모가 부담하는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비 지출정도 및 상대방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상대방 부모에게 청구가 인정되는 통상적인 양육비는 현재 실무상 자녀 1명당 30~50만원 정도입니다.

질문

탈북하여 중국에서 다른 사람 이름의 호구를 사서 중국인 남자와 결혼등기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결혼했던 중국인 남자와 부관계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국내법상으로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법률상 이혼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실혼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온 경우라면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올 수 있습니다.

질문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한국남자와 결혼을 한 이후 탈북자임을 밝히고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 법원에서 2개의 국적을 가진 탈북여성에게 동일인임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데 증명 방법이 있을까요?

- 위장하여 얻은 중국 국적의 신분과 탈북자로서 얻은 한국 국적의 신분이 동일인인 사실의 입증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통일부장관으로써 금 북한이탈주민이 입국시 신문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중국에서 위장신분 사용여부 등)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조선족)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대부분 거짓이어서 억울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남편과의 혼인생활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고, 결혼과정에서도 본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 결혼을 하고 국내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을 정산 받고 싶은데 가능한 일인지, 지출한 비용과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남편의 주장이 거짓이고 오히려 본인이 남편의 부당행위 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면 진행중인 소송에서 그러한 사실 주장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결혼과정이나 결혼생활 중에 지출한 비용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재산 형성 증식에 대한 기여도로 참작될 수는 있지만, 지출한 비용 그 자체의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이혼 위자료

결혼을 약속한 젊은 남녀가 있다. 이 예비부부는 최초의 전세자금 5천만원을 시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데 문제는 결혼 후 2달이 지났을 때 성격차이를 이유로 합의이혼에 나선 남녀. 여자는 전세자금까지 포함해서 절반의 재산을 위자료로 요구하게 되는데 너무 좋아서 결혼할 때는 언제고 두달 만에 갈라서겠다는 며느리가 꽤 씩한 나머지 시아버지는 최초의 전세자금 5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격분한 며느리는 전세자금은 빌린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준 것인 만큼 증여라고 주장하는데?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금이나 혼수품을 준비해 주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전세금이나 혼수품은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아버지가 준 전세금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한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남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아내는 먼저 남편의 전세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남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금의 반액을 당연히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만큼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2. 호적문제

일반적 절차

- 아버지가 북한인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출생시기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되므로 별도의 국적취득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출생신고만으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편, 어머니가 북한인인 경우에는 국적법이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정된 1998. 6. 14. 이후 출생자는 위와 같이 출생신고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에 국적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이때 만일 중국에 있는 자녀가 중국호적(호구)에 등록이 된 경우라면 중국인 자격으로 중국에서 중국여권을 발급은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또는 국내에 있는 출입국관리소)에서 초청 또는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출입국관리 실무적으로 중국에 있는 자녀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부자(모자)관계에 관하여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 통상,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는 중국 호구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되어 있더라도 가공의 인물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중국 호구등록만으로는 친자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이미 신청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자관계만으로는 친자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에 있는 자녀와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관계증명서, 통일부(하나원)와 국정원에서 조사서 작성한 자녀관계 내역서류 등을 첨부하여 모자관계가 입증되어야 비로소 중국 아이에 대한 한국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실무관행이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남편의 양육권포기서까지 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사

- 한편, 중국에 있는 자녀가 중국인 아버지의 호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호구에 등록이 된 경우에도 일단 호구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위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출입국 관련 부서에서의 친자관계 심사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대로 중국 호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합법적 입국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청 또는 여행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을 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호구에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중국호구에 등록된 자녀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신고한 경우 이 때 자녀는 이중국적자가 되므로 중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여 이중국적을 유지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18세(남) 또는 22세(여) 까지 국적을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 한편, 자녀가 비자를 발급받아서 국내 입국을 하였더라도 자녀의 중국인 부 또는 모와 친권, 양육권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 체류 시 한쪽 중국남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는 중국인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는 중국국적자입니다.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재중 출생자(중국에서 정식 호구, 국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를 국내입국시키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친자초청 비자발급 필요합니다.

질문

중국동포와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 그 후 중국동포와 이혼하였는데 자녀를 본인 호적에 등재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 중국 동포와 결혼 후 자녀를 입양한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위 입양사실을 입증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입양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통상 중국 동포와 결혼과 입양 절차에서 가짜 신분을 사용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입양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

딸의 생일이 1992년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1991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고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생년월일이 잘못되어 있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혼인신고 하지 않고 등거한 사람 사이에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자녀는 본인 호적에만 등재되어 출생신고는 미혼모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는 남자에게 보내기 원하고, 양육비 문제와, 입양시키는 방법을 문의합니다.

- 자녀의 생부에게 양육비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인 부모)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할 수 있습니다.

질문

가짜 중국호구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해 한국인과 결혼 후 10년을 살다가 자수를 하여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했으나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로 아이들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국적 엄마로 되어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 허위로 취득한 한국국적상의 성명, 주민번호와 새롭게 취득한 한국국적의 성명, 주민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후자의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더 높으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기존의 성명, 주민번호를 새롭게 취득한 성명 주민번호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이와 같은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임시거주지에 있을 때 부여된 주민번호를 배정된 거주지에 맞게 주민번호를 갱신받기를 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중 임시거주지(안성)을 기준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의 경우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1회에 한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 조선족 남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남편은 결혼비자로 국내 입국하였고, 아이는 엄마인 본인 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1년 지난 현재 아이의 성을 아빠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구가 데리고 왔습니다. 북한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이고 아이의 호적은 중국인 부모로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하였더니 북한 남편 앞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북한남편은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이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남편과 이혼 시기, 북한 남편의 사망시기, 중국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시기, 중국 남편과 법률혼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북한 남편과 이미 탈북 전에 이혼을 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 중국 남편과 정식으로 중국에서 법률혼을 한 경우라면 중국 남편을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사

질문

2002년 북한 배우자와 이혼 하지 않고 중국인 남편을 만나 2007년 자녀를 낳은 후 자녀를 중국국적으로 올려놓고 살았습니다. 북한남편은 2009년 사망하였고 본인은 2010년 중국국적 자녀와 남한으로 입국하여 남한 정착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니 북한남편이 배우자로 되어있고, 중국국적 자녀도 북한남편의 자녀로 밖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보호인 자녀를 출생신고 하려고보니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고 하여 인우인 2명을 세웠으나 법원에서는 인우인 뿐만 아니라 비보호 자녀가 본인의 자녀라는 증거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북한남편의 자녀로 본다면 비보호가 아닌 보호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보호 인정도 해 주지 않고 자녀가 본인의 성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에서 중국국적 자녀의 출생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모자관계 입증을 요한다면 유전자감식을 통한 친자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불법으로 입국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후 자수하여 하나원 교육수로 후 거주지로 편입하였습니다. 현재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호적에 올리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허위로 취득한 한국국적상의 성명 주민번호와 새롭게 취득한 한국국적의 성명 주민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둘 중 어느 하나로 정리해야합니다. 후자의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더 높으므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기재사항 정정신청을 하여 기존의 성명 주민번호를 새롭게 취득한 성명 주민번호로 정정해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선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이와 같은 신청을 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방학 중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는데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국적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는 되어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도 18세(남), 또는 22세(여)까지 국적을 선택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다만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 있는 자녀가 중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출생신고 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과에 국민처우신청을 하면 됩니다.

질문

본인의 자녀가 여러 차례 뇌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여 중국에 있는 조카(중국 국적자)를 양자로 입양하기를 원하는데 입양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중국 국적자에 대한 입양 서류를 구비하여 절차에 따라 입양가능. 통상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고 하나 구체적인 절차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① 한국인 배우자의 동의와 전체 입양절차에 대한 위임서 작성
 - ② 중국서류 공증, 인증 진행
 - ③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임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 ④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후견인이 없는 경우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서)
 - ⑤ 입양신고(입적 3일~7일 소요)
 - ⑥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및 기타 입양서류 접수(결과 통보 20일~30일 소요)
 - ⑦ 중국 심양 재외공관 한국 비자 접수(사증발급 7일 소요)
 - ⑧ 피입양자 한국 입국 후 국적 신청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3. 위장결혼

질문

하나원 수료후,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가 자신과 결혼한 사이로 혼인신고를 해주면 한국 돈 10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생긴다는 마음에 위장결혼을 진행하다가 신변보호관에게 실수로 말을 하게 되어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는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고, 나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수사기관, 법원 소관사안입니다.
- 약식명령인 경우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형법 제228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신고된 혼인관계를 무효화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이 되면, 위 혼인신고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되어 무효임이 명백한 것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지 않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없고, 별도로 혼인무효확인인 소를 제기하여 혼인무효를 확인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

질문

주거지 미배정 상태에서 국제결혼 서류를 작성하다가 위장결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위장결혼이 되지 않지요?

-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생겨 부부로서 결혼생활을 한다면 위 혼인신고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혼인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혼인신고만 유효한 것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

중국에 있는 남자와 국제결혼 절차를 밟고 서류를 중국으로 보내서 공증을 받았으나 한국 대사관에서 위장결혼으로 오해를 받은 후 비자를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비자발급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주재국 영사관 소관사항이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다면,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자가 행정소송으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한국남자와 혼인을 전제로 등거하다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등거남은 본인 모르게 중국조선족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위장결혼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조선족 여자와의 혼인신고가 위장결혼인 경우, 조선족 여자와 등거남은 형법 제228조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되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일 등거남과 관계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면 조선족 여자와 등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 자녀에 대해서는 등거남의 자로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등거남의 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본인이 키우는 것을 전제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조선족 남편과 혼인신고, 이혼, 재혼인신고 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만난 탈북남성과 등거하여 지내다 자녀를 낳고 자녀 호적문제로 개명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장결혼 성립이 되나요?

- 위장결혼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될 문제입니다. 만일 조선족 남편과 혼인관계가 진정한 결혼관계이었다면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탈북남성과 등거하였다면 조선족 남편과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선족 남편과는 이혼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개명을 하더라도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4. 결혼

질문

결혼 브로커의 소개로 한쪽 여성과 결혼하기로 하고 소개비 250만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본인의 현금과 컴퓨터 등을 가지고 도주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브로커의 소개로 만났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고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였다면 위장결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일방이 상대방의 현금이나 물건을 가지고 도주한 경우, 형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나,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형이 면제되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에서 다른 사람의 호구를 사서 중국인과 결혼등기를 하였습니다. 중국인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부부로 생활할 수 있을까요?

- 국내 입국하여 가족관계등록이 창설된 경우, 중국에서 산 호구와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중국인 배우자를 배우자로 초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에서의(무효 소송 또는 이혼소송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에, 국제결혼 절차를 밟아 혼인신고를 하여야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이혼

몇년 전 중국 교포와 결혼했는데 농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내는 6개월 전 집안의 패물을 모두 챙겨서 가출해버리고 말았음. 지금은 경찰서에 가출 신고를 해놓은 상태지만 여전히 찾을 길이 없음. 대답 없는 아내와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혼의 방법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과 법원에 재판으로 청구하는 재판상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두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혼사유가 필요하지 않고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한 후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특별한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할 수가 있음. 사안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함. 위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가 가출한 후 6개월 이상 소식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따라서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5. 개명

질문

하나원 퇴소 후 북한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되어 개명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왜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

자신의 탈북이 알려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할까 불안하여 개명신청 요청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개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

북한에서 국가와 관련된 중요한 일을 맡아 자신의 인적사항이 북한쪽에 알려질까 두려워하여 개명과 주민등록기준지 변경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개명의 경우 위와 같음
- 주민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북한에서 어렸을 때 입양되어 양부모 성을 사용하였다. 이제 친부모의 성으로 개명하기를 원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남한에서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파양절차(협의상 파양 또는 파양의 재판)를 거치면, 친가에 복귀하게 되나, 국내 입국탈북자의 경우 입양에 대한 기록이 없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될 때 입양관계도 나타나 있지 않을 것이므로, 파양절차도 진행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법원이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III

형사

1. 폭행
2. 교통사고
3. 기타

형사

1. 폭행

질문

여자에게 폭력배를 동원하여 때리겠다고 협박하는데 협박 당한 여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무죄가 되나요?

- 장래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로 먼저 폭행을 하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되고, 다만 형량을 정할 때 그 동기만 참작될 뿐입니다. 여자라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고, 처벌받을 때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폭행하겠다고 협박을 하면, 위 협박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증인에게서 진술서를 받아 두거나, 협박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만들어 이를 근거로 협박죄로 고소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 미리 알림으로써 장래의 폭행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의 의견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의견서 작성에 관하여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우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면, 범죄의 동기, 합의여부, 전과유무,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이 될 만한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그러나, 무죄를 주장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고,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

폭력을 행사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벌금을 일시에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벌금형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벌금납부 통지를 받은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 주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노역장에 유치되어 1일 5만원씩 환산하여 벌금액이 다 공제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나서 손목 인대 파열로 4주의 진단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 없이 방치하고 있어서 형사사건 진행중인데 민사소송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 가해자가 손해에 관한 합의금을 부족하게 주거나, 손해배상금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치료비등 쉽게 증명할 수 있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을 통한 피해보상은 형사재판과 함께 신속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 위자료 손해만이 인정되고, 피해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때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피해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때 등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피해금액을 배상받아야 합니다.

질문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쌍방 폭행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본인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았다면,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시정될 수가 있습니다.
- 만약, 수사기관의 조사가 끝나서 법원의 재판에 회부 되었다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신문과정 등을 통하여 종전의 진술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여 종래의 잘못된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서상에 자신의 주장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조서를 자세히 읽고 나서 서명해야 하며, 자신의 주장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고쳐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형사

질문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하였으나 교수는 무혐의 처리되고, 본인은 무고죄로 고소당하여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방법이 있을까요?

-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면, 재판과정에서 죄가 없음이 인정되었으므로, 위 재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재판과정 중 구속된 상태에 있었다면,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죄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죄의 이유가 교수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가 되었다면 위 판결을 근거로 무혐의처리된 사건의 재기신청을 하거나 교수를 다시 고소할 수는 있으나,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상대방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건에서도 본인은 무고죄에 대하여 무죄판결 받았더라도 당연히 상대방의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

여동생으로부터 중상해를 당해 형사고소 한 상태인데 검사가 화해를 권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형제자매 사이의 폭력사건이기 때문에 원만히 화해하여 잘 지내라는 뜻으로 화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화해를 하고 안하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화해를 원하지 않으면 동생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면 됩니다. 검사의 화해 권유를 받아들일 생각이라면 검사의 중재로 먼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치료비 등 배상을 요구하고 동생의 사과 등 적절한 내용의 조건을 내걸어 화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

등거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현재 폭력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즉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차 폭력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긴급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신청하여 2개월 이내의 가해자 격리, 2개월 이내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법원은 6개월 이내의 접근불가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처분을 할 수 있고, 폭력행위로 입은 물적 피해, 치료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 일시보호, 치료비지원 및 정신과적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지역 하나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과 법률자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폭력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진달래양. 야간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길에 불량서클 선배들로부터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데 그날의 사건으로 고막이 터지고 얼굴에 심한 상처까지 난 진달래양.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해 부모들도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치료비를 포함한 정신적 피해보상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 건지?



불법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책임 무능력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15세 이상이라고 하면 책임 무능력자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한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그런데 우리 판례에서는 부모에게는 친권자로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는데 만약 부모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자녀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부모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가해 학생들이 불량 서클에 가입해 있었고 이전에도 어떤 사고를 친 전력이 있다면 그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더 신경 써서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의 부모들은 감독자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부모를 상대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교통사고

질문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며,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요?

-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즉시 경찰관서에 사고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친 부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은 차량을 수리 등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분은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보험회사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촬영하며, 현장에서 가해자로부터 사고를 인정하는 내용의 간단한 메모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므로 보험회사 직원과 보상협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케 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됩니다. 가벼운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피해액에 대하여 합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하면 되고, 만약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배상을 위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가해자가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횡단보도상이거나 사고 후 도주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가해자나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보상 합의가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합의와 별도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수입과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질문

무면허 음주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 중 주차되어있는 자동차와 충돌 사고를 냈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신고가 되면 인명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위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신고가 되기 전에 피해자에게 상대방 자동차의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인적 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무면허 및 음주운전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받는 외에 사고자체에 대해서는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몰려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을 냈는데, 임시면허기간도 만기가 되어 앞으로 4년 동안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뺑소니)차량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후 4년 또는 5년(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달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주하게 된 경위나 도주거리 등 여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 아니라 만족할 만한 판결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보험처리하기로 합의까지 하고 헤어졌는데, 사고 한 달 뒤에 뺑소니 사유로 면허취소장을 받았고, 경찰에서 소환을 요구받았습니다. 본인은 오토바이로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면 난감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면 피해자와 사전에 보험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주차량으로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도주차량으로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고 후 신고 및 피해자 구호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서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으므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본건에서 사고 발생후 현장에서 피해자와 보험처리를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주고 받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주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도주가 아니라는 당시 상황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고, 뺑소니가 아니라는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받아 결백함이 밝혀지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된 면허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질문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14주 진단이 나왔고,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 기본적인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고 대신 합의를 해 주게 되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별도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본건 피해 14주면 중한 상해라서 만약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무겁게 받게 되므로 우선 형사상 합의라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본인이 음주운전한데다 피해자의 진단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형사합의금도 고액을 요구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아도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전액,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 후유증이 발생하여 노동력이 상실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및 위자료 등을 합하여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 만약 피해자가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가해자는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피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공탁한 후 그 공탁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면, 위 교통사고에 관하여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교통사고를 당하고 비용은 모두 보험처리 했으나, 피해를 입은 만큼 보상받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달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 일단 합의를 해 주게 되면 향후 더 이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 받은 금액이 억울해도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액을 적극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액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합의에 동의해 주어서는 안되며, 별도로 보험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보험회사와 합의한 경우라도 합의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후유장애 등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 사망하거나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가해자가 자력이 없어서 그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계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

국가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라고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구조금은 사망의 경우에는 천만원, 장애의 경우에는 그 등급에 따라 1급은 600만원, 2급은 400만원, 3급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는 요건이 엄격하고 그 금액도 작아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통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첫째, 살인이나 강력 범죄를 통해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중에서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 둘째, 살인이나 강력 범죄로 인해 중대한 신체장애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애 등급 기준상1급 내지 3급 장애에 해당하여 노동능력 100%를 상실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단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일 경우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그리고 기타 사회 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기타

질문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단 지원 단체 상담실에서 7~8명이 모여 회의 중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아 화가 나 같은 북한이탈주민 간 욕설하며 사생활이 증지 않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 상대방에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이 맞는가요?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말이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을 지적하여 드러내야지 단순히 욕설이나 경멸하는 말을 하는 정도에 그치면 모욕죄에는 해당될지 언정 명예훼손죄는 안됩니다.
- 본건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사생활이 좋지 않다'고 비방한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지적한 것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질문

북한이탈주민 여성 A는 같은 신분의 남성 B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A가 지방에 일하고 와 보니 B가 성희롱으로 구치되어있었습니다. 성희롱 당했다는 C는 평소 B와 사이가 좋지 않은 하반신 불구 장애인 여성이고 정황상 C가 거짓증언 하고 있다고 합니다. B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성(性)에 관한 사건은 제3의 목격자나 물증없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 이 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형사

진술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므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구속 피의자(피고인)는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는지, 피해자가 피해경위와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지적하여 피해자가 믿을 수 없는 거짓진술을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여권을 지인에게 빌려주고 있고 지내다가 우연히 파출소를 갔는데 본인이 공개수배 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본인의 여권을 가지고 저지른 범죄를 모두 책임져야 하나요?

-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여권법 제25조, 제16조3호 참조).
- ㉡ 따라서 본인이 여권을 타인에게 빌려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여권을 빌려 간 타인이 이를 사용하여 저지른 제3의 범죄에 대하여까지 그런 사정을 모르는 본인이 당연히 책임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만약 그 타인과 여권을 이용한 제3의 범죄를 공동모의하였거나 임무분담하여 가담해 저질렀을 때는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것입니다.

질문

동거생활을 하던 동거인이 사망을 하였는데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등 유족급여나 각종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 이런 사실혼은 단순히 주거를 함께 한다는 동거관계와 달리 강력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요하는 것이므로,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증거(예:결혼식을 올린 경우 사진, 청첩장등)와 경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해 왔거나 상호 부양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증거(예:예금통장, 공과금납부영수증등), 동거인으로 공문서에 등재한 증거(예:주민등록표등본) 및 이웃 주민의 사실 확인서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보상금청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질문

남동생의 여자친구가 아버지의 정착금을 편취하여 달아나서 몇 번 반환할 기회를 주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남동생의 탓을 하며 발뺌하는 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 피의자 측에서도 남동생의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도 진단서 제출이 가능할까요? 이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의사는 직접 진찰한 환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진단서를 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참조). 그러나 환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을 자신의 뜻에 따라 타인에게 건네주고 그 타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 유리한 자료로 쓰기 위해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 이 진단서를 제출한 행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러나, 환자가 보관하던 진단서를 타인이 함부로 가져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함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질문

중국 체류시 동거하던 사람이 본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자 한국으로 자신을 초청하라며 끊임없는 공갈협박을 하였습니다. 연락처를 수시로 바꿔도 알아내어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협박당한 사실을 통화내용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중국에 사는 중국인이라면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 실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그 중국인이 한국에 있는 다른 인물을 내세워 협박을 자행한다면 그에 대하여는 신변보호 경찰관과 상의하여 형사고소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제도

재판을 하다 보면 증거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나?

중요 서류에 대하여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공증을 받게 되면,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얻게 됩니다.

금전 채권의 경우에는 공정 증서를 받게 되면 별도의 재판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실물상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금액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 어음 공증을 받게 되면 추후 재판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IV

행정 및 정책지원

1. 주민등록
2. 정착지원
3. 각종급여
4. 기타

1. 주민등록

질문

가족관계등록(호적)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과 다른가요?

-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하여 2007년 5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별로 등록기준지(과거의 본적에 해당), 성명·본·성별·출생 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등록기준지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로 작성, 기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구분된 해당 증명서를 필요에 따라 발급신청하면 됩니다.
- 한편 주민등록표는 자치단체별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관리하는 것으로, 세대주나 세대원의 전원 또는 일부라도 거주지를 이동하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외로 이주하려는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는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므로, 세대주 내지 세대원과 가족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함께 거주하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수 있고,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을 받아보면 그 등록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

자녀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처가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처와는 이혼예정인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본인확인 후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면 되고, 인감을 변경하려면 과거에 인감 대장에 올렸던 인감을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여야 그 인감도장을 가진 자가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신고를 지연하면 분실 또는 도난당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길이 없으므로 서둘러야 하겠고, 만약 훔쳐간 남의 인감이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설사 본인의 부모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정착지원

질문

서울에 취업하게 되어 주거지를 이전하고 싶은데 현재 주택과 이주해야 할 곳의 주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북한이탈주민이 사회편입후 2년간은 주택을 해지할 수 없도록 거주지보호담당관과 특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2년 이내라도 타지역에 6개월이상 취업했을 시에는 특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 사회편입후 2년이 경과하였다면, 특약과 관계없이 주택 해지가
근거: 정착지원법 제20조

질문

입국한지 3년정도 되었으며, 현재 살던 주택을 해지하고, 일반 전세주택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돈이 모자라는데, 통일부가 보관하고 있는 주거지원금 잔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 주거지원금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종료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조기지급 가능
- 일반 전세로 이사가는 경우는 조기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지원금 조기 지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 정착지원법 시행규칙 제4조 통일부 지침 '정착금 지급등에 관한 지침'

행정 및 정착지원

질문

하나원에서 임대주택을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배정받아서, 임대주택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자녀교육 때문에 반드시 서울에 살아야 하는데, 서울에서 주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하나원에서 퇴소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일부로부터 주택을 알선 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개인적으로 직접 주택을 구해야하며,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는 주거지원금 지급도 불가
- 또한, 서울지역을 관할하는 SH공사에서 실시하는 ‘북한이탈주민 특별공급’도 하나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때 주택포기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원의 임대주택 배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권유합니다.(특히 서울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근거 : 하나원 지침 ‘주거배정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질문

지난 8월부터 처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2월 15일이면 거주지보호기간(5년)이 종료됩니다. 종료된 이후에도 고용지원금이 나오나요?

- 원칙적으로 고용지원금은 거주지보호기간중 최초로 취업한 때부터 2년(24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잔여기간의 고용지원금을 지급해주며, 퇴직한 경우에는 잔여기간이 남았더라도 고용지원금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문

저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취업장려금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간(개월수)을 계산할 때 '1개월'은 '15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개월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고용보험가입일수가 15일 미만인 달이 있었다면 해당 개월 수 만큼 더 근무를 하여야 취업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창업지원이 타 창업지원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현재 통일부와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창업지원대출이 타기관의 대출과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우선 현대차미소금융재단에서 운영하는 'H-하나론'은 북한이탈주민에 특성화된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각종 대출조건(대출한도, 이자율, 거치기간 등)도 타기관의 대출지원보다 유리한 편입니다.

3. 각종급여

질문

임시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집을 배정받게 되어 전입하게 되었다. 전입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었고 의료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의료급여가 확정되기 전 몸이 아파 진찰을 받았는데 몇 달 후 지역의료보험비가 발생되었다고 고지서가 집으로 발급되어 왔습니다. 최초거주지에서 신규등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날부터 의료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한 곳이 달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지역의료보험료를 취소해야하는가요? 보험료를 내야하는가요?

- 북한이탈주민 의료급여는 관련지침(의료급여사업안내)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 신청지역과 기초생활 수급 신청지역이 다를 경우에 대한 적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무적인 사안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판단이 중요할 것임.

근거 :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

질문

미성년자로 하나원 퇴소 후 남한에 정착 당시 북한이탈주민인 양부의 집으로 거주지가 편성되었습니다. 양부는 본인보다 먼저 탈북 해 안정적으로 적응하여 현재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원 퇴소 후 6개월간 수급권 생계급여 수급특례에 적용되는데 본인의 경우 양부가 차상위계층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 수급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는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가요?

- 우리나라 생계급여 적용기준은 개인별 단위가 아닌 세대별 단위입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당연히 양부와 동일세대로 적용
- 또한, 하나원 퇴소후 6개월간 수급특례의 의미는, '6개월간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소득조사 등을 거쳐 수급대상으로 인정됐을 때, 근로능력자의 경우 '6개월간 자활사업 참여조건 없이 수급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급여 수급시, 근로능력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
- 따라서 하나원 퇴소 6개월 이내라도 다른 세대원이 소득이 있다면, 소득조사에서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근거 : 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행정 및 정착지원

질문

탈북과정 및 남한생활에서 오는 적응 스트레스와 부부싸움이 잦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에게도 본인 부담금이 있다면서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1종 의료급여수급자는 진료비가 무료 아닌가요?

- 1종의료급여 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항목도 존재합니다.

근거: 복지부 지침 '의료급여사업안내'

질문

현재 기초생활수급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운전은 배워 운전직이나 1톤 화물차를 구입해서 장사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게 된다면 기초생활수급금이 중지되는가요?

- 기초생활수급적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도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에 산정됩니다.

- 다만, 장애인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산 적용시 감면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자세한 적용기준은 지자체에 문의

근거 : 복지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질문

취업 후 취업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장이 꼭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가요? 의료보험 1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4대보험이 아닌 2대보험(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지급 조건입니다.
- 정부는 2010년 7월 1일부터 거주지보호기간(5년)내의 정규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거주지보호기간 동안 1종 의료급여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9월경 시행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질문

북한에서 탈북 후 중국에서 국적을 위조하여 딸을 한국으로 입국 시켰으나 입국 후 교육, 의료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국적을 위조 밀입국한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상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딸의 행위 및 정착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 일반 외국인과 달리 탈북자에 대하여는 강제추방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 경찰서 보안계(경찰서 대표 1566-0112)로 전화하여 자진신고시 군,국정원 등의 심문(일반 탈북자의 경우와 같은 심문절차)을 거쳐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면 처벌없이 남한 정착 등 가능합니다.

질문

한쪽 남편과 북한에서 데려온 딸과 살다가 먼저 한국에 입국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호구가 있는 딸을 데려왔는데 딸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남편이 중국으로 데려가 중국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 딸이 중국국적자라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딸은 중국국적(중국 호구가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국적 보유한 것으로 보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중국측의 신원확인만 되면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질문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내에 잠깐 왔는데 국내에서 살고 싶어졌는데 가능할까요?

- 일반적 미국영주권자의 경우와 같이 1년 이상은 한국체류가 불가능합니다(1년 체류 후 미국 갔다가 다시 오는 방법이 있긴 하나 계속 반복될 경우 영주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살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탈북자와 동일함).

질문

본인의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유공자 가족으로 인정받기를 위해 작은아버지와 법적 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독립유공자 유족증은 유공자의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손자녀(3순위)의 순서대로 딱 1장만 발급되므로 작은 아버지가 생존해있는 경우, 유족증을 받아들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 다만 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할아버지와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추가입적등록신청'을 하면 유공자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할아버지의 친손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단, 본인의 아버지-할아버지 간의 친자관계, 작은아버지-아버지의 형제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만 합니다).

질문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시켜서 살 수 있을까요? 지원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중국인 남자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중국에서 데려오고 싶다면, 그 자녀(1998.6.13. 이후 출생자)를 별도의 국적신청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중국여권을 받고 한국입국비자를 받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질문

중국 체류시 중국동포 남자와 만나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는 중국인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는 중국 국적자입니다. 자녀는 중국에서 계속 살되 방학 중일 경우 한국에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관광비자로 데려오기에는 매번 보증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남편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입국가능하고, 자녀는 방문, 동거 비자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복수비자가 가능하므로 입국때마다 발급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중국내의 한국영사관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보증금납부문제는 중국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질문

정착 후 중국에 계시는 조선족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여권신청을 하였는데 신원번호조회가 되지 않아 여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여 국정원에 전화하여 신원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전화하였으나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주민등록신고를 해야만 주민등록번호(신원번호는 주민등록번호의 오기로 보입니다)가 부여됩니다.
- 이미 주민등록신고를 했다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또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지문만으로 주민초본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확인가능하고, 또는 구청에 가서 지문확인후 생년월일, 주소 등을 확인해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

하나원 퇴소 후 중국에서 등거하던 조선족 남편(A)과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였는데 본인의 북한남편과의 혼인 관계로 국제결혼 가능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본인과 A는 남한에서 함께 거주하기 위해 본인이 아는 북한이탈주민의 이름으로 A는 위장결혼 하였으며 이 사실이 5개월만에 적발되어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1여년 뒤 본인과 북한남편의 이혼이 처리되었으며 이후 3여년을 기다렸다가 국제결혼절차를 밟고 A가 비자신청을 하였으나 약 1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비자 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 출입국사무소나 법무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A의 비자발급이 가능할까요?

- 위장결혼에 따른 강제출국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자발급이 계속하여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비자발급문제는 한국내의 법무부가 아니라, 중국내 한국대사관 소관이므로, 그곳에서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행정 및 정착지원

질문

북한이탈주민 운전면허학원비 50%감면을 활용해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학원을 찾아 갔지만 학원에서는 할인혜택이 없다는 대답뿐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통일부와 자동차전문학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자동차운전학원의 전액부담으로 인한 할인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전학원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제로 할인을 시행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질문

남편의 외도로 인해 집을 싸서 나가버렸는데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을 하면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시 재산분할 관련한 별도 특례조항 없으며, 일반국민의 이혼에 따른 재산권 문제 해결방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

세든집에 난 불

만약 세든 집에 불이나서 집이 모두 소실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경찰 조사 결과 전기 누전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화재 원인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화재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는데 임차 보증금은 불과하고 오히려 불난 집값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을 때 과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임차인은 주택을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집주인에게 원상태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불타버린 경우에는 그 화재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입증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이 밝혀졌고, 그 화재가 집주인이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임차인은 책임을 면할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만약 전세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집주인의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차일피일 살고있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주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V

부록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9.27 현재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조(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조(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p> <p>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p> <p>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용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3. 26]</p>		
<p>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p> <p>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6]</p>	<p>제1조의2(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p> <p>2. 형제자매</p> <p>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7. 31]</p>	

시행규칙	시행령
	<p>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장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2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대통령실·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조(소위원회) 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인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에 따른 간사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다음 번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개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전문개정 2010.9.27]</p> <p>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7조(간사)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제2조에 따른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의안(議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미리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통일부의 해당 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10조(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0.9.27] <p>제11조(보호신청사실 통보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호신청(이하 "보호신청"이라 한다)을 받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신청을 한 사람(이하 "보호신청자"라 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③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 <p>제12조(임시 보호 등의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보호신청 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로 한다.</p> <p>② 국내에 입국한 보호신청자에 대한 제항에 따른 조사는</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p> <p>③ 제항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3조(임시 보호 등의 결과 통보)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통보할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보호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4조(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 법 제8조제항 단서에 따른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압호 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항의사를 표시한 사람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작극 활동한 사람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이나 그 밖의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0.9.27]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국가정보원은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p> <p>④ 국가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7조(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의 권리·의무 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8조(보호의 재신청) ① 보호신청자 중 보호가 거부된 사람은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여부를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보호 결정의 기조) ①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p>② 통일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은 제1항에 따른 재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 여부를 결정하여 보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9조(국내 입국교섭 등) ①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p> <p>② 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 시기·방법 등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6조(보호 결정의 기조) ① 법 제8조제4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적·외교적으로 대한민 국내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2. 제12조에 따른 임시 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이탈한 사람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p>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p>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佛留)되거나 강압되는 등의 사유로 자우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p> <p>④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체육교육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p>
<p>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③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에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정 2010.9.27]</p> <p>제21조(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어려운 사항 해소 및 그 밖에 자립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부에 심리·법률·직업·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인행 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⑤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부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22조(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원 및 부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3조(임시신분증명서 발급)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4조(협조요청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분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에게 그 시설의 경비·치안유지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 등은 이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5조(보호금품의 지급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② 세항에 따른 보호금품의 지급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6조(등돌대정) 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록한 등돌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돌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2조(등돌대정)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돌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돌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③ 국가정보원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항에 따른 등록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27조(학력 인정 기준 및 절차) ① 보호대상자가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p> <p>② 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p>	<p>제2조(학력·지역 인정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항에 따른 학력인정이나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인정·자격인정 신청서에 그 학력이나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4조(자격 인정)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정착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이하 "예비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이 학력 인정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비학교 수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과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8조(자격 인정 절차) ① 법 제4조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9조(보수교육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 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해당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교육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0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p> <p>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부한이탈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p>	<p>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31조</p> <p>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은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이에 협조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조(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p> <p>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7조(직업훈련수당) ①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p>	<p>제32조(직업훈련수당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기간 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창작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p>	<p>② 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 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3조(직업지도)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 및 경력 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 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 안내 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직업에 관한 지원 <p>②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창작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 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p>	<p>제34조(고용촉진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 경력, 기능소지 여부 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현황, 고용보험 취득 현황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조의2(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영 제3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0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사람 ② 영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③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인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복합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p> <p>②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p>고용지원금 신청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p> <p>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번호	시행령	시행규칙
<p>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⑦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 	<p>제3조의3(우선 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생산품의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 구매 등 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호대상자의 취업을 앞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35조(취업 알선)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으려는 모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취업 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p>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부터 하역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p> <p>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② 제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 정도와 복합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p> <p>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 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5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년 <p>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 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6]</p>	<p>제35조의3(영농정착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 교육훈련 실시 또는 농업현장 실습 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에 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 등의 재학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2. 협동농장 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 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업인후계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복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26]</p>		
<p>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p>	<p>제36조(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 법 제18조제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복한의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희망 분야의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하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복원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p>	<p>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에 한한다.</p> <p>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행정안전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② 복환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거나 퇴거를 희망하면 복환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3.26]</p>	<p>제37조(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법령)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복환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복환</p>	<p>제37조의2(중앙행정기관 등의 평가 방법 및 절차)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복환이탈주민 고용률을 해당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p>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항에 따른 평가관의 장은 평가대상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부한이탈주민 고용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외교·안보·국방 등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경우에는 제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p>	
	<p>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p>	<p>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는 제12조제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상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군)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p>

시행규칙	시행령	법
		<p>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3조의5(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①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4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복혼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p> <p>③ 제4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p> <p>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p> <p>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p>

시행규칙	시행령	법
		<p>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① 복합이 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재함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26]</p>
<p>제4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끝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p> <p>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p>	<p>제38조(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 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지역: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지원에 필요</p>	<p>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재함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p> <p>③ 재함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권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지당권 설정이 금지되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려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한 사항은 협의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0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4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및 그 밖에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복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8조의2(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 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정 소년"이라 한다)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 서의 보호가 종료된 후에도 주거지원이 지연되고 있는 보호대상자 등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 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p>	<p>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 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 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8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 분양·임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 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숙식의 제공 2. 진화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전문개정 2010.9.27]</p>	<p>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9.27]</p>
<p>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정착금의 지급) ① 법 제21조제정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p>	<p>제15조(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바(제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금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p>	<p>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작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p> <p>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3. 장바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관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작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정작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p> <p>④ 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0조(보로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로금(보로金)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바(제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따라 2억5천만</p>	<p>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작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6조(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서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 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p> <p>②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 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4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이를 지급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p>	<p>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 있는 정보: 2억5천만원 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1억5천만원 이하 3. 전차·유도무기 및 그 밖의 비행기: 5천만원 이하 4. 포·기관총·소총 등 무기류: 1천만원 이하 5. 재화: 시가 상당액 <p>② 제1항에 따른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설시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제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받은 경우</p> <p>나. 제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p> <p>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p> <p>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41조(실태조사 등) ① 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거주지 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p>	<p>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p> <p>②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③ 영 제39조제5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7조(거주지 보호대상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대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분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1조의2(거주지에서 생활 안내)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지원봉사자(이하 "정착도우미"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p> <p>제42조(거주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2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소속 공무원과 법 제8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p> <p>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③ 법 제28조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 등 변경신고서에 신상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9.27]</p>

시행규칙	시행령	법
<p>제7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전문상담사를 선발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상담사를 성직과 희망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적응센터 등에 배치하거나, 복한이탈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10.9.27]</p>		<p>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업한 복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p>
<p>제7조(거주지 보호대상 등)</p> <p>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에 따라 거주지 보호대장의 내용을 빈기 말의 다음 달 20일까지 동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8조에 따라 변동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 등 변경신고서에 신청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빈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동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빈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동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적 능력(修養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4조(입학 등의 지원) ① 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러는 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러는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학습·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정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만 25세 미만인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만 35세 미만인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 	<p>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및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留級)으로 재수하거나 정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인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p>	<p>제45조의2(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증보되지</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p>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수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6조(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수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p> <p>③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p>	<p>제8조(수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9.27]</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 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p>	<p>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와 기성회비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7조(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학교의 교육기간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1년 이내로 한다.</p> <p>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에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p> <p>③ 예비학교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착지원시설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7]</p> <p>[종전 제47조의2는 제47조의5로 이동 <2010.9.27>]</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5조(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47조의3(예비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예비학교는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학력진단 및 진로·진학 상담 2. 법 제13조에 따른 학력 인정 등 편입학 지원 3.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학습·보충학습 4. 심리 진단 및 상담 등을 통한 학교·사회생활 적응교육 [본조신설 2010.9.27]</p> <p>제47조의4(예비학교의 교원 임용 등) ①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사로 임용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비학교의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교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p>	
<p>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제19조 삭제 (2009.8.5)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 자격을 상실한 날 <p>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p> <p>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47조의5(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p>제10조(생업 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에 따라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 설치의 허가나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 중 통일부장관의 지인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 지원신청서에 편의</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26조의4(지급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p>	<p>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전문개정 2010.9.27] [제47조의2에서 이동 <2010.9.27>]</p>	<p>사업하기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 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 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신고나 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4. 부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p>	<p>제48조(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직계를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에 따른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법무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10.9.27]</p>	
<p>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시행규칙	시행령	법
		<p>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p> <p>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 사업 	
	<p>제48조의2(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구성 등) ①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p> <p>②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p> <p>③ 이사장은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상근이사를 둔다.</p> <p>④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p> <p>⑤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을 거처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 임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p>	<p>제48조의3(재단의 운영 등) ① 재단은 정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 <p>②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및</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p> <p>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p> <p>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p> <p>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p> <p>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p> <p>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p> <p>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 사업</p> <p>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p> <p>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신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p> <p>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p>	<p>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7]</p> <p>제48조의4(재단의 지도·감독 등)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12항에 따라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서류 및 물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9.27]</p>	

시행령	시행규칙
<p>법</p> <p>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p> <p>㉘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p> <p>㉙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p> <p>㉚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p>㉛ 재단이 해산할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p> <p>㉜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p> <p>㉝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㉞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복합이탈주 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㉟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㊱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49조(권한의 위임)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거주지 보호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상 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을 <p>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2조에 따른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 인의 직업훈련은 제외한다)의 실시 2. 제32조의2에 따른 훈련수당의 지급 3. 제33조에 따른 직업지도 4. 제35조에 따른 취업신청서 접수 및 취업 알선 <p>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단에 위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생활 시설의 운영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단체의 정착지원활동 지원사업 3. 제41조의2에 따른 정착도우미사업 [전문개정 2010.9.27] 	

시행규칙	시행령	시행규칙
	<p>법</p> <p>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통일부장관은 제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제33조(벌칙)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③제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p> <p>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3.26]</p>	<p>시행령</p> <p>제50조(이의신청) ①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9.27]</p>
	<p>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복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p>	

법	시행령	시행규칙
<p>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3. 26]</p>	<p>부칙 <제10188호, 2010. 3. 2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22406호, 2010. 9. 27></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교육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p> <p>제3조(이사 임명에 관한 특례) 제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재단의 최초 설립 시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 없이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p>
<p>제2조(북한10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출생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창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칭은 재단의 명의로 본다.</p> <p>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p>		

2.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정현황

※ 지역내 하나센터에 연락하시면 지정된 번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권역	단체명	서비스지역	연락처 및 주소
서울 (4)	동부	한적 서울거사 (권약봉사관)	송파, 강동, 강남, 서초, 관악, 동작, 성동, 광진	02-882-5210~1 서울 관악구 성현동 1712-2 동작관악봉사관 2층
	서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강서,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종로, 중	02-2668-8600 / 서울 강서구 가양3동 1486번지
	남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02-2690-8762 / 서울 양천구 신월 4동 540-1
	북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노원, 성북, 중랑, 강북, 도봉, 동대문	02-948-0520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405
경기 (6)	동부	칠솔종합사회복지관	용인, 성남, 이천, 광주, 하남, 양평, 여주	031-714-6333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6
	서부	덕유사회복지관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과천	032-325-2161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3동 1041
	서북	우림복지재단	김포, 고양, 파주	031-924-5784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14 임대상가 105호
	중부	군자종합사회복지관	안산, 군포, 의왕, 수원	031-410-607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
인천 (2)	남부	평택 YMCA	화성, 오산, 평택, 안성	031-656-2000 / 경기도 평택시 비진동 851
	북부	한국청소년가족상담교육원	의정부, 포천, 남양주, 양주, 동두천, 구리, 가평, 연천	031-544-1154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96-84
	남동	하이사회복지센터	남동, 연수	032-437-1173 / 인천 남동구 논현동 56-1 2층
	부평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부평, 계양	032-527-9743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57
강원 (2)	동부	동해지역자활센터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인제, 고성, 양양	033-535-1648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239-1
	서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춘천, 원주, 홍천, 영월, 명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원주 컨소시엄)	033-254-6670 /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239-1 033-762-8131 / 강원도 원주시 명륜2동 705
대전	진지역	생명사회복지관	진 지역	042-283-9191 / 대전시 동구 판암2동 239
충북	진지역	한적 충북거사	진 지역	043-230-8641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후암동 318-14

지자체	권역	단 체 명	서비스지역	연락처 및 주소
충남 (2)	서북	천안생용종합사회복지관	천안, 아산, 서산, 홍성, 예산, 당진	041-571-4064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생용3동 1284
	중남	자유총연맹 충남지부	공주, 보령, 논산, 계룡, 금산, 연기, 부여, 서천	041-881-6045 / 충남 공주시 웅진동 98
부산	진지역	부산YWCA 세터민지원센터	진 지역	051-441-0900 /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8-7
울산	진지역	울산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진 지역	052-296-3161 / 울산시 중구 남외동 529-2
대구	진지역	북천이주민지원센터	대구, 경산	053-956-0464 /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105-1
경북 (2)	동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포항, 경주, 영천	054-256-0456 /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 810-5 포항YWCA 3층
	서북	경북이주민센터	구미, 칠곡, 김천, 안동, 영주, 문경, 상주	054-444-8861~2 / 경북 구미시 원평동 1071-9 3층
경남 (2)	동부	한적 경남지사 (진원봉사관)	창원, 마산, 진해, 김해, 밀양, 양산, 의령, 함안, 창녕	055-263-4138~9 / 경남 창원시 용호동 4-4
	서부	한적 경남지사 (진주봉사관)	진주,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함양, 함창, 합천	055-762-2252 / 경남 진주시 가좌동 697-6
광주 (2)	서부	광주전남북천이주민지원센터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	062-374-4284 /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92-3 일우빌딩 2층
	북부	한적 광주·전남지사 (광주봉사관)	북구, 목포(전남 북부권)	062-528-1070 /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226-4 한적 광주봉사관
전북	진지역	전주YWCA	진 지역	063-224-550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547-1
전남	남부	한적 광주·전남지사 (순천봉사관)	순천, 여수 등 남부권	061-753-3951~2 / 전남 순천시 기곡동 965 한적 순천봉사관
제주	진지역	한적봉사회 제주도 지사협의회	진 지역	064-758-3502 / 제주시 용담1동 266-1

16곳 지자체, 총 30개 권역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발행처 통일부(정착지원과)

전화 02-2100-5785 / 팩스 02-2100-5929

대한변호사협회(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전화 02-3476-4003 / 팩스 02-3477-4009

인쇄일 2011년 1월

발행일 2011년 1월

인쇄처 웃고문화사(02-2267-3956)

